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33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허 영·임호선·박지원

홍기원 • 박 정 • 주철현

박상혁 • 민형배 • 전재수

권칠승 · 소병훈 · 박정현

이연희 • 이기헌 • 조계원

박해철 의원(16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설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 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이외의 주 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주차장의 신·재생에 너지 설비 설치 의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해당 주차장의 50%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설치하게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따라설치되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자 게 상 기 하여야한다. ④ 가장을 설치하려는자 에게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한다.

령령으로 정한다.